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1과-2827
등록일자	2016.2.12.
결재일자	2016.2.1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재산3팀장	세무1과장	기획경제국장		
마선희	위성욱	신길호	02/12 김용운		
협조자	재산2팀장 재산1팀장	임경식 이규화			

상속 미신고 재산(주택,토지 및 건축물) 정리를 위한

사망자 부동산 과세자료 조사정비 계획

추진개요

- 조사대상 : 재산세과세대장의 소유자 중 사망자 243명 / 대상물건 631건
※ 서울시 세무과 일괄 조회, 세무종합 구축 후 발체
- 추진기간 : 2016. 2. 12.~2016. 3. 15.
- 조사내용: 상속인 조사 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

기대효과

- 장기간 상속 미신고 재산에 대한 정비
⇒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확충 기여
- 상속 납세의무자 결정 통지 및 취득세 신고 안내
⇒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

2016. 2. 12.

강 남 구
(세 무 1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▶ 지방세법 제7조 외 상속취득 납세의무자 등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2016년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▶ 예산 해당없음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▶ 우리구 재정확충 및 주민에게 납세안내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O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O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 ⑤ 시장조사 ----- (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O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▶ 서울시 25개구 전체 추진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

사망자 부동산 과세자료 조사정비 계획

재산세 과세대장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여,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 정비를 통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

1 추진개요

- 조사대상 : 사망자 243명 ⇨ 대상물건 631건
 - 재산세 현시점 과세대장 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등록전산망 조회 결과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미신고된 자료
 - ※ 서울시 세무과-2172(2016.1.29) : '16년 상반기 사망 납세의무자 부동산 과세자료 구축
- 추진기간 : 2016. 2. 12.~2016. 3. 15.
- 조사내용: 상속인 조사 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
 - 사망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상속인 조사 후 납세의무자 결정하고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

2 추진일정

- 조사대상 자료 발취 : 2016. 2. 3.
 - 재산세 현시점 대장 소유자 중 사망자 자료 일괄 구축(서울시) 후 발취
- 상속인 조사 후 취득세 납세의무자 결정 : 2016. 2. 4.~2. 28.
 - 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본 등 공부확인
- 취득세 과세(3월수시) 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: 2016. 3. 1.~3. 10.
 - 신고납부기간 경과분 취득세 수시과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 등재
 - 신고납부기간 미도래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
 - ※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)
- 직권등재 통지 및 조사정비 결과 제출 : 2016. 3. 15.까지
 - 별첨2. 사망자 정비실적 제출 서식

○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부과누락자료와 연계 정비

- 미신고된 재산 중 재산세 정기분이 주된상속자로 과세된 후 현시점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건은 취득세 신고여부 조사하여 누락 건 수시과세

※ 재산세 주된상속자 과세건은 과세시점별 대장에 소유자 등재함이 원칙

○ 관계법령 및 정비요령

※ 지방세법 제120조에서 '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고, '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음.

※ 아울러 법 제116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'시장·군수는 법 제1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,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·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⇒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망자 상속재산 중 현재 미신고 재산에 대하여 일괄제공(세무종합시스템 구축)함에 따라
- ⇒ 동별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등의 자료 조사 후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결정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

※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'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(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)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'라고 하고 있고,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'지방세기본법 제44조(연대납세의무) 제1항(공유물) 및 제5항(민법준용)'에 따라 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
- ⇒ 따라서 취득세 수시부과 고지서에는 법정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인에게 전체 세액을 기재(각 상속인의 지분 기재 포함)한 고지서를 각기 발송
- ⇒ 상속인 조사결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 내지 제1011조 규정에 따른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기준으로 결정

- ⇒ 상속재산 미신고시 재산세 납세의무는 주된 상속자에 있는 것이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지분과 동일하게 결정
- ⇒ 실제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수시부과 시에는 시행규칙 [별지 제65호] 서식 (재산세 과세대상 직권등재 통지)으로 결정된 재산세납세의무자 내역을 동봉 통지

※ 지방세기본법 제42조(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)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[수유자(受遺者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또는 「민법」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(이하 이 조에서 "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"이라 한다)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「민법」 제1009조·제1010조·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(按分)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※ 향후 민법 제1013조(협약에 의한 분할)에 따라 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변경(수정)하여 과세연도별 납세의무를 결정
- ⇒ 다만, 상속재산으로 미신고된 경우와 직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 107조 등에 의한 ‘주된 상속자’가 재산세 납세의무자
- ⇒ 과세 이후 지분 조정 신청이 있어도 재산세는 조정대상이 아님에 유의

4 기대효과

- 장기간 상속 미신고 재산에 대한 정비
 - ⇒ 누락세원 방지 및 세입확충 기여
- 상속 납세의무자 결정 통지 및 취득세 신고 안내
 - ⇒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

- 붙임 1. 조사대상 자료현황.
2. 사망자 정비실적 제출 서식. 끝.